

위원회 등 수당 지급규칙 [1995. 2. 10 규칙 제1호]

일부개정 1996. 3. 29 규칙 제 21호
1999. 5. 14 규칙 제 67호
2000. 2. 7 규칙 제 90호
2003. 5. 2 규칙 제138호
2003. 7. 24 규칙 제146호
2006. 7. 26 규칙 제192호
2009. 12. 14 규칙 제231호
2015. 4. 7 규칙 제299호(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)
2017. 12. 28 규칙 제327호
2023. 3. 2 규칙 제363호
2024. 3. 4 규칙 제393호
전부개정 2025. 7. 1 규칙 제41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범위)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관 제12조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
2. 위원회에 위촉된 원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수당

제3조(지급방법) ①위원회 수당 지급은 매 회의 개최시마다 지급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위원회 수당 지급은 시작과 종료 시간이 기재된 서명부, 시간이 포함된 사진, 회의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지급액) ①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액은 [별표]와 같다.

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[별표]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참석자의 사회적 저명도에 따라 100%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원거리 거주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시 [별표]의 이사회 수당 지급기준에 50%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지급된 수당은 이 규칙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위 원 회 수 당 지 급 기 준

(단위 : 원)

구 분	단 가	비 고								
이사회	· 400,000원									
위원회 참석비	· 기본료(2시간) : 200,000원 · 초과분 (시간당) : 100,000원 <table><tr><td>기본 (2시간)</td><td>3시간 운영</td><td>4시간 운영</td><td>5시간 초과운영</td></tr><tr><td>20만원</td><td>30만원</td><td>40만원</td><td>50만원</td></tr></table> ※ 초과 1시간 미달 시 초과분 미 지급	기본 (2시간)	3시간 운영	4시간 운영	5시간 초과운영	20만원	30만원	40만원	50만원	상한액 : 500,000원 ※ 상한액 초과 불가
기본 (2시간)	3시간 운영	4시간 운영	5시간 초과운영							
20만원	30만원	40만원	50만원							
온라인위원회 참석비	· 기본료(2시간) : 100,000원 · 초과분(시간당) : 40,000원 ※ 초과 1시간 미달 시 초과분 미 지급	상한액 : 180,000원 ※ 상한액 초과 불가								
서면 수당	· 100,000원 범위 내/회	상한액 : 100,000원 ※ 상한액 초과 불가								

※ 『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.